

	<p><u>나.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</u></p> <p><u>다.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(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)이 4억 원 이하일 것</u></p> <p><u>라.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</u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과세기준일 현재 <u>제1항제11호</u>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p>가. · 나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제1항제11호</u> 또는 <u>제12호</u>----- -----.</p> <p>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	---